

손해사정 보수 기준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과 제휴사는 계약에 따라 손해사정 수수료를 정한다.

단, 상호 협정 및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지 않는 경우 본 기준표를 준용한다.

■ 목적

보험업 감독규정 제9-17조(보수)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사정 보수조항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삭제<2014. 12. 31.>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보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손해사정사들마다 각자 달리 적용하고 있어 시장 질서가 문란해져 있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9-17조(보수) <삭제 2014.12.31.> ①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경우에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 기준에 의한다.

■ 적용 단위

이 기준은 1 보험사고 1 피해물을 손해사정 단위로 한다.

■ 재물 손해사정사 기본보수

특수피해물 및 건설기계, 중장비, 특수용도 차량 포함
(승합, 일반화물, 승용, 이륜차 제외)

종목	손해사정 금액	요율(%)	기준액(원)
특수 피해물 손해사정 (차량 제외)	5백만원 미만		손해사정 삭감액의 25% (무과실기준, 최고한도 55만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손해사정 삭감액의 25% (무과실기준, 최고한도 55만원)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555,000 ~ 1,012,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012,000 ~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254,000 ~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1,870,000 ~ 2,88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2,880,000 ~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4,400,000 ~ 5,85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5,850,000 ~ 8,0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8,050,000 ~ 별도협의

[붙임 2]



※ 권역 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일비, 숙박비 별도 지급

■ 보수의 기준

1.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 금액’이라 함은 ‘손해액 확정금액’으로, 손해사정사가 정한 사정 금액(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상기 보수는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과실상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약관(특별약관 포함)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수행 시에도 위 재물손해사정사 기본보수에 의거 하여 지급한다. (1.5배 지급 불인)
3. 착수금은 예상 보수액의 1/3 또는 특약에 의한 약정금액으로 하고, 계약 시점에 지급 받기로 하며,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하지 않을 때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각 담보 목적물(이해관계자)별 사정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각 목적물(이해관계자)별 사정 금액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며, 의뢰인이 가지급금(선급금)을 수령한 때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 약정에 따라 산정된 중간보수를 지급 받기로 한다.
5. 업무 진행 시 위 보수 외 특별비용(구조 안전진단 비용, 기타 감정 비용 등)은 반드시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위에 따라 정한 보수 외에 부가적으로 여비·교통비 등 실비 발생 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여비·교통비 등을 산정할 때는 ‘손해사정사 일비 및 출장비’에 의한다.
7. 기타 위장사고 적발 및 법률심의 면책건 등 손해액 절감 시
☞ ‘손해사정 금액’ 기준액 20%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8. 피해자(또는 피해세대수)가 10인 이상인 집단사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한다.

구 분	할 증 율
10인 ~ 30인 미만	손해사정수수료의 1.1배
30인 ~ 200인 미만	손해사정수수료의 1.3배
200인 이상	손해사정수수료의 1.5배

8.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한다.

(손해조사가 종료된 건으로 공제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만 위탁한 경우)

■ 차량 손해사정사 기본보수

종 목	손해사정 금액	최저액	기준액(원)
차량	5백만원 까지	200,000원	손해사정 삭감액의 25% (무과실기준, 최고한도 55만원)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까지	300,000원	
	1천만원 초과	재물 손해사정사 기본보수표 적용	
이륜차	1천만원 이하	400,000원	
	2천만원 이하	500,000원	
	3천만원 이하	600,000원	
	3천만원 초과	800,000원 또는 상호 협의	

※ 권역 외는 교통비 및 통행료, 일비, 숙박비 별도 지급

■ 손해사정사 일비 및 출장비

‘일비·출장비’라 함은 업무 위탁자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조사·확인 출장 시간, 각종 관련 자료 수집 시간, 손해사정서 작성 시간 등)에 대한 시간급을 말하며,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

구 분	지급기준
항공 임	실 비 (왕복 기준)
철도 임	KTX(고속전철) 실비 (왕복 기준)
선 임	1등 정액 (왕복 기준)
대중교통 및 기타 교통수단	실 비 (왕복 기준)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및 통행료 실비
일 비(식비 포함)	30,000원
숙박비 (1 일 당)	50,000원 (출장 편도 200km 이상 시)

1. 대한민국 내 선임손해사정사 법인의 본·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 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지역 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하였으면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여비·교통비 : Naver 기준 (유류대는 통상의 거리 × 통상의 리터당 기름값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실비를 정할 수 있다.